



제415회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

- 정청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57호)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03호)
- 고민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27호)
-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61호)
- 한준호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200465호)

2024.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참고사항: 제21대 국회 논의	7
1. 논의 경과	7
2. 주요 쟁점	8
IV . 검토의견	12
1. 방송문화진흥회법의 목적 변경(안 제1조): 고민정의원안	12
2.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증원 및 이사 추천 권한 확대(안 제6조): 정청래·이훈기·고민정·최민희·한준호의원안	14
3.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립 및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등 (안 제9조 등): 정청래·이훈기·고민정·최민희·한준호의원안	30
4.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 보장(안 제10조의4 신설): 한준호의원안	47

I . 제안경위

【정청래의원안】

가. 발 의 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5. 31.

다. 회 부 일 : 2024. 6. 11.

【이훈기의원안】

가. 발 의 자 : 이훈기의원 등 74인

나. 발 의 일 : 2024. 6. 3.

다. 회 부 일 : 2024. 6. 11.

【고민정의원안】

가. 발 의 자 : 고민정의원 등 77인

나. 발 의 일 : 2024. 6. 7.

다. 회 부 일 : 2024. 6. 11.

【최민희의원안】

가. 발 의 자 : 최민희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4. 6. 10.

다. 회 부 일 : 2024. 6. 11.

【한준호의원안】

가. 발 의 자 : 한준호의원

나. 찬 성 자 : 169인

나. 발 의 일 : 2024. 6. 13.

다. 회 부 일 : 2024. 6.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청래의원안】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안 제6조 등).

또한,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안 제10조의3 신설 등).

【이훈기의원안】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 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제6조제6항·제9조제4항 단서·제9조제5항·제9조제6항·제10조의3 신설 등).

【고민정의원안】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3).

【최민희의원안】

현행법상 방송문화진흥회의 모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사 구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고 함)의 사장 임명에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3)

【한준호의원안】

제안이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문화방송의 사장의 임기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문화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사장이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도록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추천한 자가 문화방송의 사장으로 선임된 경우 그 사장의 임기를 규정하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문화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안 제6조 등).
- 나.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의3 신설 등).
- 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이 진흥회가 추천한 자로 선임된 경우 그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Ⅲ. 참고사항: 제21대 국회 논의

1. 논의 경과

○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송관계법안”)의 대안 3건이 제21대 과방위에서 의결되었고, 본회의 부의(2023.4.28.) 및 가결(2023.11.9.)되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른 재의 결과 최종적으로 부결(2023.12.8.)되었음.

○ 제21대 국회 방송관계법안의 세부 논의 경과는 다음과 같음.

- 2022. 11. 29.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¹⁾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²⁾을 통합하여,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2022. 11. 29.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³⁾을 통합하여,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2022. 11. 29.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서 「한국교

1) 의안번호 2100365(정청래의원안), 2100407(정청래의원안), 2103346(박성중의원안), 2105248(정필모의원안), 2108457(전혜숙의원안), 2115427(정필모의원안)

2) 의안번호 2105250(정필모의원안), 2108458(전혜숙의원안), 2115421(정필모의원안)

3) 의안번호 2103347(박성중의원안), 2105251(정필모의원안), 2108453(전혜숙의원안), 2115423(정필모의원안)

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⁴⁾을 통합하여, 「한국교육
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2022. 12. 1. 과방위 안전조정위원회 조정안 의결
- 2022. 12. 2. 과방위 전체회의 대안 의결 및 법사위 회부
- 2023. 1. 16.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및 제2소위 회부
- 2023. 2. 22. 법사위 제2소위 상정 및 심사
- 2023. 3. 21. 「국회법」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 2023. 4. 28. 「국회법」 제86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본회의 부의(4.27.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가결)
- 2023. 11. 9. 국회 본회의에서 본회의 상정 및 가결
- 2023. 12. 1.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서 제출
- 2023. 12. 8. 국회 본회의 재의 결과 부결

2. 주요 쟁점

- 제21대 방송문화진흥회법 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의 이사 9명에 대해 현행법은 방송
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4) 의안번호 2103365(박성중의원안), 2105249(정필모의원안), 2108462(전혜숙의원안), 2115424(정필
모의원안)

대안은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확대하고, 추천주체를 다양화하여 각 주체의 추천을 받아 방통위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둘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이하 “사장추천위”)에 대해서 현재에는 법률상 명문 규정이 없는데,

대안은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사장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셋째, 사장의 임명·선임 절차에서는, 현재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의 사장은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대안은 사장추천위가 3명 이하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한 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2회 이상 부결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해당 후보자를 이사회가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음.

구분		현행	제21대 과방위 의결 대안	
이사회 구성	KBS	방통위(여3:아2) → 이사회(11명) 추천 → 대통령 임명	<공 통> ○ 이사 수 21명으로 확대 ○ 추천주체: 국회 5(교섭단체 의석수 비율) +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 (EBS는 학회 3 + 교육단체 2 + 교육감협의회 1) + 시청자위원회 4 + 방송기자연합회 2 + 한국피디연합회 2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2 ※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는 방통위가 선정	각 주체의 추천 → 방통위 임명제청 → 대통령 임명
	방문진	방통위(여3:아2) → 이사회(9명) 임명		각 주체의 추천 → 방통위 임명
	EBS	방통위(여3:아2) → 이사회(9명) 임명 ※ 교육부장관 추천 1인, 교육관련단체 추천 1인		각 주체의 추천 → 방통위 임명

구분		현행	제21대 과방위 의결 대안
사장후보 국민추천 위원회 구성 방안	KBS· MBC· EBS		○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 ○ 이사회는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
사장 임명· 선임 절차	KBS	이사회 과반수 찬성으로 제청 → 인사청문 → 대통령 임명	○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인 이하 후보자 복수 추천 → 재적이사 2/3 이상 찬성 의결 (특별다수제) + 결선투표제 (2회 이상 부결시) → 이사회 제청(KBS·EBS)·추천(MBC) → 대통령 임명(KBS·EBS)/ 주주총회 승인(MBC) ※ KBS 사장: 국회 인사청문
	MBC	이사회 과반수 찬성으로 추천 → 주주총회 승인	
	EBS	방통위 동의(과반 찬성) → 방통위원장이 임명	

○ 이에 대한 제21대 국회 각 당의 입장 및 재의 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음.

쟁점	제21대 국회 국민의힘 입장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입장	재의 요구 사유
이사 수 증원	-이사 수 21명 증원은 과도 -공운법상 공공기관 이사는 15명 이내 원칙	-다양성 확보 위해 증원 필요	
이사 추천 주체	-이사 추천 주체의 대부분이 친민주당 성향	-다양한 기관에 추천권을 할당하여 정치권 영향력 축소할 필요	-(KBS·방문진·EBS) 이사회가 편향적으로 구성될 우려 -(KBS·EBS) 공사의 경영을 견제·감시하는 이사회 기능 형해화 ※이사의 견제·감시 대상인 특정 직능 관련 단체가 추천 주체에 포함됨 -국민에 의해 선출된

쟁점	제21대 국회 국민의힘 입장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입장	재의 요구 사유
			대통령(KBS) 또는 방 통위(방문진·EBS)의 이사 임명권 제한
사장추천위 구성방식	-사장추천위 구성을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여 영향력 행사 가능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것	-사장추천위 구성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이사회에 포괄 위임 →자의적이고 편파적 사장추천위 구성·운영 및 사장 인사 초래 위험
사장 임명· 선임 절차	-현행 방식 선호	-사장 선출에 국민 참여 보장	

IV. 검토의견

1. 방송문화진흥회법의 목적 변경(안 제1조): 고민정의원안

가. 주요 내용 및 검토 의견

-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이하 “법”) 제1조는 진흥회가 문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 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고민정의원안은 이 중에서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공정한 방송문화”로, “공공복지 향상”을 “공공이익 향상”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 “공공복지”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계 되는 복지”이고,
“공공이익”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물질 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두루 보탬이 되는 것. 또는 그런 일이나 결과”임.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이익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민정의원안은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법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흥회 및 문화방송의 설립 취지 및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증원 및 이사 추천 권한 확대(안 제6조): 정청래·이훈기·고민정·최민희·한준호의원안

가. 주요 내용

(1) 정청래·이훈기·고민정·한준호의원안

○ 정청래·이훈기·고민정·한준호의원안은 진흥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 이사 구성을 추천 주체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국회 교섭단체(의석 수 비율 고려) 추천 5명, ②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 6명(지역방송 관련 학회 추천 2명 포함), ③ 시청자위원회 추천 4명, ④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2명, ⑤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2명, ⑥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2명임.

【정청래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임원) 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감사(監事) 1명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임원) ① ----- -----21명-----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신설>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특정 성(性)을 1명 이상 추천하여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6명(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진흥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특정 성(性)이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 가.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2명 나.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2명 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2명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 공모·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⑤·⑥ (생 략)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이사를 임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이훈기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임원) 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감사(監事) 1명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③ (생 략)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제6조(임원) ① ----- -----21명----- -----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성별(性別)로 각각 1명 이상을 추천(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6명(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성별로 각각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⑤·⑥ (생략)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u>진흥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 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성별로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u> 4. <u>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u> 가. <u>방송기자연합회 추천 2명</u> 나. <u>한국피디연합회 추천 2명</u> 다. <u>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2명</u> ⑤ <u>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 사 추천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 공모·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u> ⑥ <u>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이사를 임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⑦·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고민정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6조(임원) 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감사(監事) 1명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임원) ① ----- -----21명----- ----- -----. -----.

현행	개정안
②·③ (생략)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신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성별(性別)로 각각 1명 이상을 추천(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6명(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성별로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진흥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성별로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 가.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2명 나.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2명 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2명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 공모·의견수렴 등의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⑤·⑥ (생 략)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이사를 임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한준호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임원) 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감사(監事) 1명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③ (생 략)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제6조(임원) ① ----- -----21명----- -----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성별(性別)로 각각 1명 이상을 추천(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6명(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2

현행	개정안
	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성별로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진흥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 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성별로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 가.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2명 나.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2명 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2명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 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 공모·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이사를 임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신설>	
<신설>	
⑤·⑥ (생략)	

(2) 최민회의원안

○ 최민회의원안은 진흥회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 이사 구성을 추천 주체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국회 교섭단체(의석 수 비율 고려) 추천 5명, ②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기간, 활동내용, 회원 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협의하여 추천 5명(지역방송 관련 학회 추천 1명 포함), ③ 시청자위원회 추천 2명, ④ 문화방송의 임직원이 자신의 대표성을 위임하여 구성된 과반 이상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 추천 3명임.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임원) 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감사(監事) 1명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임원) ① ----- -----15명-----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u>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u>	④ ----- -----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u>방송통신위원회가</u> -----.
<신설>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각

현행	개정안
<신설>	교섭단체는 특정 성(性)을 1명 이상 추천하여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신설>	2.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기간, 활동내용, 회원 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5개 이상의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5명(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3.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도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 경우 특정 성(性)이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4.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이 자신의 대표성을 위임하여 과반 이상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신설>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 공모·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⑤·⑥ (생략)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나. 검토 의견

(1) 정청래·이훈기·고민정·한준호의원안

○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이하 “법”) 제6조⁵⁾는 제1항에서 진흥회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제4항에서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사의 구성에 대해서는 법률상 규정은 없으나, 관례적으로는 여당 성향 6명, 야당 성향 3명을 추천하여 왔음.

- 이사회는 법 제10조⁶⁾에 따라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사항 및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음.

○ 정청래·이훈기·고민정·한준호의원안은 현행법이 진흥회의 이사와

5)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임원) 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감사(監事) 1명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이하 생략)

6)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0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자금계획 및 결산

2.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3.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4. 정관의 변경

5.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6.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7.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8.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평가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정관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10.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함으로써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정청래·이훈기·고민정·한준호의원안은 제21대 방송관계법안(대안)과 이사의 수(21명) 및 추천주체가 동일한데, 제21대 국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제기되었음.

○ 첫째, 이사의 수 증원에 대해서는, 다양성 확보를 위해 증원을 필요하다는 입장(더민주)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⁷⁾에서 공공기관의 이사회를 15인으로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21명은 과도하다는 입장(국힘)이 대립하였음.

쟁점	제21대 국회 국민의힘 입장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입장	재의 요구 사유
이사 수 증원	-이사 수 21명 증원은 과도 -공운법상 공공기관 이사는 15명 이내 원칙	-다양성 확보 위해 증 원 필요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구성) ①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 둘째, 이사의 추천 주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관에 추천권을 할당하여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더민주) 이사 추천 주체의 대부분이 친민주당 성향으로 치우쳐 있다는 입장(국힘)이 대립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재의 요구 사유에는, 이사회가 편향적으로 구성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었음.

쟁점	제21대 국회 국민의힘 입장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입장	재의 요구 사유
이사 추천 주체	-이사 추천 주체의 대부분이 친민주당 성향	-다양한 기관에 추천권을 할당하여 정치권 영향력 축소할 필요	-(KBS·방문진·EBS) 이사회가 편향적으로 구성될 우려 -(KBS·EBS) 공사의 경영을 견제·감시하는 이사회 기능 형해화 ※이사회의 견제·감시 대상인 특정 직능 관련 단체가 추천 주체에 포함됨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KBS) 또는 방통위(방문진·EBS)의 이사 임명권 제한

○ 정청래·이훈기·고민정·한준호의원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의요구서와 동일한 입장이라고 설명하였음.

○ 참고로 해외 각국의 이사회 구성 및 추천주체를 포함한 임명절차는 다음과 같음.

구분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사회	(BBC) 이사회 14명	NHK 지배구조는	(ARD) ARD 의장,	(경영위원회) 이사진 15명

구 분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구성	=비상임 10명 + 상임 4명	(경영위원회) 의사결정기구 12명 + (집행이사회) 회장, 부회장, 이사(7~10명) *경영위원회가 회장(사장) 임면, 예산 사업 관련 계획 결정, 임원 직무집행 감독	방송대표협의회(GVK) (ZDF) 방송평의회(60명), 운영위원회(12명)	= 의회(상원, 하원 각각 1명) 추천 2명 + 정부 추천 5명 +방송위원회 추천 전문가 5명 +노동자 대표 2명
임명 절차	(비상임이사 5명) 이사장 1명, 민족권역 이사 4명 → 문화부 공모 거쳐 국왕 임명 (BBC재직자 중 선임된 상임이사 4명(사장 포함) + 비상임5) → BBC 이사회 내 선임위원회가 추천 →BBC 이사회가 임명	(경영위원회) 총리가 지역(8명 지역) 및 분야 대표 (교육, 문화, 과학, 산업 등)가 공평하게 대표되도록 고려하여 위원 후보자 명단 상·하원에 제출 → 각각의 동의 → 임명	(ARD 의장) 각 지역방송사 사장 중 다수결로 임명 (방송대표협의회(GVK)) 18명 = 9개 회원사의 방송평의회 장 + 운영위원회 장 9 (ZDF 방송평의회) 60명 = 주정부 16명 + 연방정부 2명 + 경제/종교/노동/언론단체 등 추천 26명 + 16개주 시민/사회인권/전문분야 대표 16명 (ZDF 운영위원회) 12명=방송평의회 임명 8명+연방추천 4명	경영위원은 국회 상·하원 소관 상임위의 추인(반대표 3/5 초과시 무효)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종합해보면, 진흥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권
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려는 정청래·이훈기·고민정·한준호의원안에 대해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주체에 추천권을 할당하여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입법취지와 추천 주체의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
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최민회의원안

○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이하 “법”) 제6조⁸⁾는 제1항에서 진흥회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제4항에서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사의 구성에 대해서는 법률상 규정은 없으나, 관례적으로는 여당 성향 6명, 야당 성향 3명을 추천하여 왔음.

- 이사회는 법 제10조⁹⁾에 따라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사항 및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음.

○ 최민회의원안은 현재 진흥회의 모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해

8)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임원) 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감사(監事) 1명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이하 생략)

9)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0조(이사의 기능)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자금계획 및 결산

2.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3.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4. 정관의 변경

5.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6.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7.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8.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평가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정관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10.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사회 이사 구성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에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점에서,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으로써 문화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최민회의원안은 제21대 방송관계법안(대안)과 이사의 수(21명)보다 적은 15명을 제시하였고, 추천주체도 특정 직능단체에 대한 정파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특정 직능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대신 문화방송의 임직원이 자신의 대표성을 위임하여 구성된 과반 이상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를 추가하였음.

- 이사의 수 15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¹⁰⁾(이하 “공운법”)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이사회와 동일함.

- 참고로, 앞서 살펴본 해외사례 중에서 독일의 경우에도 ZDF 방송평의회의 경우 이사 60명 중 26명을 경제·종교·노동·언론 단체 등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 최민회의원안은 이사의 수 측면에서 국민의 힘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던 공운법 상의 공공기관 이사의 수 15명과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구성) ①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동일하다는 점, 이사의 추천주체의 측면에서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던 직능단체를 제외하였다는 점에서 재의 요구 사유를 반영한 측면이 있어 보임.

- 다만, 안 제6조제4항제4호 중 “과반 이상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과반수 이상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과반수 미만의 단체들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최민회의원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의요구서와 동일한 입장이라고 설명하였음.
- 종합해보면, 진흥회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려는 최민회의원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의요구서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법률안의 재의 요구 가능성을 낮추는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주체에 추천권을 할당하여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입법취지와 추천주체의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립 및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등 (안 제9조 등): 정청래·이훈기·고민정·최민희·한준호의원안

가. 주요 내용

(1) 정청래·이훈기·고민정·한준호의원안

- 정청래·이훈기·고민정·한준호의원안은 진흥회의 이사회에 사장 추천위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사회는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추천위를 구성하여야 하고, 사장추천위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사장추천위는 3명 이하의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함(안 제10조의3).
- 이사회는 사장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안 제9조제4항),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 결선투표제를 실시함(안 제9조 제5항).

【정청래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이사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9조(이사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④ ----- ----- . 다만, 제10조제10 호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 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3에 규정된 사장후보국 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인 이하의 복 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해 재적이사 3분 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추 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 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
<신 설>	⑥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 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추천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⑦·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1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0조(이사회의 기능)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설></u> 11. (생략) <u><신설></u>	10의2. 제10조의3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11.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국민위원회(이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3인 이하의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이훈기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이사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제9조(이사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④ ----- ----- . 다만, 제10조제10호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인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
<신 설>	⑥ 제10조의3제4항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추천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⑦·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1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0조(이사회의 기능) ----- -----.

현 행	개 정 안
1. ~ 10. (생 략) <u><신 설></u> 11. (생 략) <u><신 설></u>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10조의3의 사장후보국민추천 위원회 구성과 운영 11.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진흥회가 최다출자 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를 추 천하기 위한 국민위원회(이하 “사장 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사 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 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국민 추천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 보자를 3인 이하의 복수로 추천하여 야 한다.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 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 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 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고민정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이사회 구성) ① ~ ③ (생략)	제9조(이사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④ ----- ----- . 다만, 제10조제10호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3에 규정된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3명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
<신 설>	⑥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 의 사장 추천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⑤· ⑥ (생략)	⑦· 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10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0조(이사회 기능)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제10조의3의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구성과 운영

현 행	개 정 안
11. (생 략) <u><신 설></u>	11. (현행과 같음) <u>제10조의3(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국민위원회(이하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②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u> <u>④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3명 이하의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u> <u>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u> <u>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u>

【한준호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9조(이사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제9조(이사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④ ----- ----- . 다만, 제10조제10호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3에 규정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
<신설>	⑥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추천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⑦·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1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0조(이사회의 기능)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설>	10의2. 제10조의3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현 행	개 정 안
11. (생 략) <u><신 설></u>	11. (현행과 같음) <u>제10조의3(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국민위원회(이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u> <u>④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3명 이하의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u> <u>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u> <u>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u>

(2) 최민회의원안

- 최민회의원안은 진흥회의 이사회에 사장추천위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 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사회는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추천위를 구성하여야 하고, 사장추천위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회와 공사는 사장추천위를 홍보하여야 함(안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 또한, 이사회는 사장추천위 구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사장추천위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함(안 제10조의3제4항 및 제5항).
- 이사회는 사장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안 제9조제4항),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 결선투표제를 실시함(안 제9조 제5항).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이사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제9조(이사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신설> ⑤·⑥ (생략) 제10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10. (생략) <신설> 11. (생략) 제10조의2(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①·② (생략) <신설>	④ ----- ----- . 다만, 제10조제10호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3에 규정된 사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인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10조(이사회 기능) ----- ----- .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10조의3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11.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진흥회의 사장 추천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0조의3(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u> ① <u>진흥회에</u> <u>진흥회가</u> <u>최다출자자인</u> <u>방송사업자의</u> <u>사장후보자를</u> <u>추천하기</u> <u>위한</u> <u>위원회(이하 “사장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u> <u>둔다.</u> ② <u>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u> <u>성별, 연령,</u> <u>지역 등을</u> <u>고려하여</u> <u>무작위로</u> <u>선정된</u> <u>100명의</u> <u>위원으로</u> <u>구성한다.</u> ③ <u>진흥회와</u> <u>진흥회가</u> <u>최다출자자인</u> <u>방송사업자는</u> <u>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u> <u>국민들이</u> <u>관심을</u> <u>가질</u> <u>수</u> <u>있도록</u> <u>홍보</u> <u>해야</u> <u>하며,</u> <u>독립적으로</u> <u>운영될</u> <u>수</u> <u>있</u> <u>도록</u> <u>보장하고</u> <u>활동을</u> <u>지원해야</u> <u>한다.</u> ④ <u>진흥회는</u> <u>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u> <u>제</u> <u>2항에</u> <u>따라</u> <u>구성될</u> <u>수</u> <u>있도록</u> <u>세부기</u> <u>준을</u> <u>마련해야</u> <u>한다.</u> ⑤ <u>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u> <u>사장후보자</u> <u>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u> <u>과정을</u> <u>거쳐</u> <u>3인</u> <u>이하의</u> <u>복수</u> <u>후보자를</u> <u>진흥</u> <u>회에</u> <u>추천하여야</u> <u>한다.</u> ⑥ <u>진흥회는</u> <u>특별한</u> <u>사유가</u> <u>없으면</u> <u>진</u> <u>흥회가</u> <u>최다출자자인</u> <u>방송사업자의</u> <u>사장의</u> <u>임기만료</u> <u>90일</u> <u>전까지</u> <u>사장후</u> <u>보추천위원회</u> <u>를</u> <u>구성하여야</u> <u>한다.</u> ⑦ <u>제1항부터</u> <u>제6항까지</u> <u>규정한</u> <u>사항</u> <u>외에</u> <u>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u> <u>구성</u> <u>과</u> <u>운영</u> <u>및</u> <u>사장후보자</u> <u>추천</u> <u>등에</u> <u>필요</u> <u>한</u> <u>사항은</u> <u>이사회가</u> <u>정한다.</u>

나. 검토 의견

(1) 정청래·이훈기·고민정·한준호의원안

- 법 제10조제10호¹¹⁾는 진흥회의 이사회가 문화방송의 사장 추천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추천된 사장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됨.
- 정청래·이훈기·고민정·한준호의원안은 현행법이 진흥회 이사의 선임 과정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진흥회에 사장추천위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정청래·이훈기·고민정·한준호의원안은 제21대 방송관계법안(대안)과 사장추천위 구성 및 사장의 임명 절차가 동일한데, 제21대 국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제기되었음.
- 첫째, 사장추천위 구성방식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였다는 입장

11)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0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0.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

(더민주)와 사장추천위 구성을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국힘)이 대립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재의 요구 사유에는, 사장추천위 구성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이사회에 포괄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사장추천위 구성·운영 및 사장 인사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었음.

- 둘째, 사장의 임명·선임 절차에 대해서는, 사장 선출에 국민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더민주)과 현행법의 방식을 선호하는 입장(국힘)이 대립하였음.

쟁점	제21대 국회 국민의힘 입장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입장	재의 요구 사유
사장추천위 구성방식	-사장추천위 구성을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여 영향력 행사 가능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것	-사장추천위 구성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이사회에 포괄 위임 →자의적이고 편파적 사장추천위 구성·운영 및 사장 인사 초래 위험
사장 임명· 선임 절차	-현행 방식 선호	-사장 선출에 국민 참여 보장	

- 정청래·이훈기·고민정·한준호의원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의요구서와 동일한 입장이라고 설명하였음.

- 종합해보면, 문화방송의 사장추천위를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인으로 구성하고, 사장선출과정에서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는 정청래·이훈기·고민정·한준호의원안에 대해서는,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입법취지와 사장추천위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최민회의원안

○ 법 제10조제10호¹²⁾는 진흥회의 이사회가 문화방송의 사장 추천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추천된 사장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됨.

○ 최민회의원안은 현재 진흥회의 모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문화방송 사장의 임명제청에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진흥회에 사장추천위를 설치해 국민들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

12)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0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0. 진흥회가 최대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최민회의원안은 제21대 방송관계법안(대안)에 사장추천위는 무작위로 선정된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구체화하고(안 제10조의3제2항), 사장추천위 구성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안 제10조의3제4항), 사장추천위가 사장 후보자의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의 과정을 거치도록 법문언에 명시(안 제10조의3제5항)하는 등의 조문을 추가하여 사장추천위 구성을 추가하였는데,

사장추천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을 법문언에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재의 요구 사유를 반영한 측면이 있어 보임.

- 최민회의원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의요구서와 동일한 입장이라고 설명하였음.

- 종합해보면, 문화방송의 사장추천위를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인으로 구성하고, 사장선출과정에서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는 최민회의원안에 대해서는,

사장추천위 구성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위임했다는 재의요구서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재의요구 가능성을 낮추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입법취지와 사장추천위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률

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4.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 보장(안 제10조의4 신설): 한준호의원안

가. 주요 내용

- 한준호의원안은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문화방송의 사장이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임기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4(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의 임기 등) ①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이 진흥회가 추천한 자로 선임된 경우 그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방송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나. 검토 의견

- 현행법은 문화방송 사장의 해임 절차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법 제10조제10호¹³⁾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사장을 추천할 수 있고 추천된 사장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하여 임명하므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가 사장의 해임을 의결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해임하고 있음.
- 한준호의원안과 유사한 입법례로는 「한국투자공사법」 제23조에서 한국투자공사의 사장인 임원의 신분보장을 하고 있는 것들을 수 있음.
 - 한국투자공사의 사장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성과 부진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해임 의결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함.

< 신분보장 입법례 >

「한국투자공사법」

제15조(임원) 공사에는 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제23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22조(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13)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0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0.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

- | |
|---|
| <p>3. 공사의 경영성과의 부진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해임의결이 있는 때</p> <p>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때</p> |
|---|

- 한준호의원안은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여, 문화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종합해보면,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를 3년을 명문화하고, 이를 보장하려는 한준호의원안에 대해서는, 임명절차대로 이사회가 의결하고 이를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해임하는 현행법의 취지와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여 문화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226